

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내용

개정일자: 2025.10.31.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</p> <p>가. 제공대상자</p> <p>- 대외기관 보고 및 업무협조에 관련된 기관: 국회, 행정부처, 금융감독원 등</p> <p>나.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</p> <p>1) 대외기관 업무 보고 등 법령상의 의무이행</p> <p>2)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</p> <p>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</p> <p>3) 식별정보</p> <p>4) 투자자정보</p> <p>5) 금융거래정보</p> <p>※공시 기준일 현재 당사는 제3자 제공, 업무위탁 등의 업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	<p>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</p> <p>가. 제공대상자</p> <p>- 대외기관 보고 및 업무협조에 관련된 기관: 국회, 행정부처, 금융감독원 등</p> <p>나.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</p> <p>1) 대외기관 업무 보고 등 법령상의 의무이행</p> <p>2)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</p> <p>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</p> <p>3) 식별정보</p> <p>4) 투자자정보</p> <p>5) 금융거래정보</p> <p>※공시 기준일 현재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업무,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	자구수정